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82
----------	-------

발의연월일 : 2026. 7. 6.

발 의 자 : 이달희 · 김대식 · 김상훈
김종양 · 서천호 · 박형수
최보윤 · 박충권 · 윤재욱
이진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그런데 법률에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 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광융합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u>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u> (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u>5년마다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u>----- ----- -----.</p> <p>② (현행과 같음)</p>